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1.2.3차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점)자모집공고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1차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코로나-19 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 www.동탄역헤리움센트럴.com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제한, 축소운영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1차」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체온 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로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인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및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지침 및 진행요원의 안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2.01.14) 기준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분양이 적용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1.14) 현재 화성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거주자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화성시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1.14) 현재 화성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만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 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시청 건축과 2022년 01월 14일[2022-건축과-분양신고-4]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2021-건축과-신축허가-1199] ■ 시행수탁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관리형토지신탁)
■ 시행위탁자 : 주식회사 힘찬건설 ■ 시공사 : 주식회사 하나건설산업 ■ 분양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반 1024-4번지(동탄2신도시 일반상업용지 9-4BL)
■ 지역별, 지구별, 구역용도 : 일반상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탄2신도시지구) ■ 대지면적 : 2,153.7㎡ ■ 연면적 : 19,056.0452㎡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 4층~지하 1층(주차장, 기계실 등),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지상 10층(업무시설(오피스텔))
■ 공급규모 : 업무시설(오피스텔) 144실, 근린생활시설 13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 주차대수 : 총 152대(법정기준 151대)
■ 내진설계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KDS410000:2019)에 따라 설계 되었고,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표기 MMI등급 진도7(0.202G)으로 산정됩니다.
본 시설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입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타입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분양호실수	해당층수
A	59.5905	21.8866	5.7318	36.1674	123.3763	13.8794	72	2~10층
B	59.3920	21.8137	5.7127	36.0469	122.9653	13.8332	63	2~10층
C	62.4860	22.9500	6.0103	37.9248	129.3711	14.5538	8	2~10층
C-1	62.4860	22.9442	6.0140	37.9242	129.3684	14.5564	1	10층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호수	타입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가	총분양가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회차(10%) 2022-03-20	2회차(10%) 2022-06-20	3회차(10%) 2022-09-20	4회차(10%) 2023-03-20	5회차(10%)-자납 2023-05-20	잔금 40% 입주시
201~203	A	285,000,000	285,000,000	28,500,000	570,000,000	598,500,000	59,850,000	59,850,000	59,850,000	59,850,000	59,850,000	59,850,000	239,400,000
204~206	B	284,000,000	284,000,000	28,400,000	568,000,000	596,40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238,560,000
207	C	258,500,000	258,500,000	25,850,000	517,000,000	542,850,000	54,285,000	54,285,000	54,285,000	54,285,000	54,285,000	54,285,000	217,140,000
208~209	B	271,500,000	271,500,000	27,150,000	543,000,000	570,150,000	57,015,000	57,015,000	57,015,000	57,015,000	57,015,000	57,015,000	228,060,000
210	B	269,000,000	269,000,000	26,900,000	538,000,000	564,900,000	56,490,000	56,490,000	56,490,000	56,490,000	56,490,000	56,490,000	225,960,000
211~213	A	269,500,000	269,500,000	26,950,000	539,000,000	565,950,000	56,595,000	56,595,000	56,595,000	56,595,000	56,595,000	56,595,000	226,380,000
214,216	A	249,500,000	249,500,000	24,950,000	499,000,000	523,950,000	52,395,000	52,395,000	52,395,000	52,395,000	52,395,000	52,395,000	209,580,000
215	B	248,500,000	248,500,000	24,850,000	497,000,000	521,850,000	52,185,000	52,185,000	52,185,000	52,185,000	52,185,000	52,185,000	208,740,000
301~303	A	288,000,000	288,000,000	28,800,000	576,000,000	604,800,000	60,480,000	60,480,000	60,480,000	60,480,000	60,480,000	60,480,000	241,920,000
304~306	B	287,000,000	287,000,000	28,700,000	574,000,000	602,700,000	60,270,000	60,270,000	60,270,000	60,270,000	60,270,000	60,270,000	241,080,000
307	C	261,500,000	261,500,000	26,150,000	523,000,000	549,150,000	54,915,000	54,915,000	54,915,000	54,915,000	54,915,000	54,915,000	219,660,000
308~309	B	274,500,000	274,500,000	27,450,000	549,000,000	576,450,000	57,645,000	57,645,000	57,645,000	57,645,000	57,645,000	57,645,000	230,580,000
310	B	272,000,000	272,000,000	27,200,000	544,000,000	571,20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228,480,000
311~313	A	272,500,000	272,500,000	27,250,000	545,000,000	572,250,000	57,225,000	57,225,000	57,225,000	57,225,000	57,225,000	57,225,000	228,900,000
314,316	A	252,500,000	252,500,000	25,250,000	505,000,000	530,250,000	53,025,000	53,025,000	53,025,000	53,025,000	53,025,000	53,025,000	212,100,000
315	B	251,500,000	251,500,000	25,150,000	503,000,000	528,150,000	52,815,000	52,815,000	52,815,000	52,815,000	52,815,000	52,815,000	211,260,000
401~403	A	291,000,000	291,000,000	29,100,000	582,000,000	611,10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244,440,000
404~406	B	290,000,000	290,000,000	29,000,000	580,000,000	609,0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243,600,000
407	C	264,500,000	264,500,000	26,450,000	529,000,000	555,450,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222,180,000
408~409	B	277,500,000	277,500,000	27,750,000	555,000,000	582,750,000	58,275,000	58,275,000	58,275,000	58,275,000	58,275,000	58,275,000	233,100,000
410	B	275,000,000	275,000,000	27,500,000	550,000,000	577,50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231,000,000
411~413	A	275,500,000	275,500,000	27,550,000	551,000,000	578,550,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231,420,000
414,416	A	255,500,000	255,500,000	25,550,000	511,000,000	536,550,000	53,655,000	53,655,000	53,655,000	53,655,000	53,655,000	53,655,000	214,620,000
415	B	254,500,000	254,500,000	25,450,000	509,000,000	534,450,000	53,445,000	53,445,000	53,445,000	53,445,000	53,445,000	53,445,000	213,780,000
501~503	A	294,000,000	294,000,000	29,400,000	588,000,000	617,400,000	61,740,000	61,740,000	61,740,000	61,740,000	61,740,000	61,740,000	246,960,000
504~506	B	293,000,000	293,000,000	29,300,000	586,000,000	615,30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246,120,000
507	C	267,500,000	267,500,000	26,750,000	535,000,000	561,750,000	56,175,000	56,175,000	56,175,000	56,175,000	56,175,000	56,175,000	224,700,000
508~509	B	280,500,000	280,500,000	28,050,000	561,000,000	589,050,000	58,905,000	58,905,000	58,905,000	58,905,000	58,905,000	58,905,000	235,620,000
510	B	278,000,000	278,000,000	27,800,000	556,000,000	583,800,000	58,380,000	58,380,000	58,380,000	58,380,000	58,380,000	58,380,000	233,520,000
511~513	A	278,500,000	278,500,000	27,850,000	557,000,000	584,850,000	58,485,000	58,485,000	58,485,000	58,485,000	58,485,000	58,485,000	233,940,000
514,516	A	258,500,000	258,500,000	25,850,000	517,000,000	542,850,000	54,285,000	54,285,000	54,285,000	54,285,000	54,285,000	54,285,000	217,140,000
515	B	257,500,000	257,500,000	25,750,000	515,000,000	540,750,000	54,075,000	54,075,000	54,075,000	54,075,000	54,075,000	54,075,000	216,300,000
601~603	A	297,000,000	297,000,000	29,700,000	594,000,000	623,70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249,480,000
604~606	B	296,000,000	296,000,000	29,600,000	592,000,000	621,600,000	62,160,000	62,160,000	62,160,000	62,160,000	62,160,000	62,160,000	248,640,000
607	C	270,500,000	270,500,000	27,050,000	541,000,000	568,050,000	56,805,000	56,805,000	56,805,000	56,805,000	56,805,000	56,805,000	227,220,000
608~609	B	283,500,000	283,500,000	28,350,000	567,000,000	595,350,000	59,535,000	59,535,000	59,535,000	59,535,000	59,535,000	59,535,000	238,140,000
610	B	281,000,000	281,000,000	28,100,000	562,000,000	590,10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236,040,000
611~613	A	281,500,000	281,500,000	28,150,000	563,000,000	591,150,000	59,115,000	59,115,000	59,115,000	59,115,000	59,115,000	59,115,000	236,460,000
614,616	A	261,500,000	261,500,000	26,150,000	523,000,000	549,150,000	54,915,000	54,915,000	54,915,000	54,915,000	54,915,000	54,915,000	219,660,000
615	B	260,500,000	260,500,000	26,050,000	521,000,000	547,050,000	54,705,000	54,705,000	54,705,000	54,705,000	54,705,000	54,705,000	218,820,000
701~703	A	297,000,000	297,000,000	29,700,000	594,000,000	623,70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62,370,000	249,480,000
704~706	B	296,000,000	296,000,000	29,600,000	592,000,000	621,600,000	62,160,000	62,160,000	62,160,000	62,160,000	62,160,000	62,160,000	248,640,000
707	C	270,500,000	270,500,000	27,050,000	541,000,000	568,050,000	56,805,000	56,805,000	56,805,000	56,805,000	56,805,000	56,805,000	227,220,000
708~709	B	283,500,000	283,500,000	28,350,000	567,000,000	595,350,000	59,535,000	59,535,000	59,535,000	59,535,000	59,535,000	59,535,000	238,140,000
710	B	281,000,000	281,000,000	28,100,000	562,000,000	590,10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236,040,000
711~713	A	281,500,000	281,500,000	28,150,000	563,000,000	591,150,000	59,115,000	59,115,000	59,115,000	59,115,000	59,115,000	59,115,000	236,460,000
714,716	A	261,500,000	261,500,000	26,150,000	523,000,000	549,150,000	54,915,000	54,915,000	54,915,000	54,915,000	54,915,000	54,915,000	219,660,000
715	B	260,500,000	260,500,000	26,050,000	521,000,000	547,050,000	54,705,000	54,705,000	54,705,000	54,705,000	54,705,000	54,705,000	218,820,000
801~803	A	300,000,000	300,000,000	30,000,000	600,000,000	630,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252,000,000
804~806	B	299,000,000	299,000,000	29,900,000	598,000,000	627,90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251,160,000
807	C	273,500,000	273,500,000	27,350,000	547,000,000	574,350,000	57,435,000	57,435,000	57,435,000	57,435,000	57,435,000	57,435,000	229,740,000
808~809	B	286,500,000	286,500,000	28,650,000	573,000,000	601,650,000	60,165,000	60,165,000	60,165,000	60,165,000	60,165,000	60,165,000	240,660,000
810	B	284,000,000	284,000,000	28,400,000	568,000,000	596,40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238,560,000
811~813	A	284,500,000	284,500,000	28,450,000	569,000,000	597,450,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238,980,000
814,816	A	264,500,000	264,500,000	26,450,000	529,000,000	555,450,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222,180,000
815	B	263,500,000	263,500,000	26,350,000	527,000,000	553,350,000	55,335,000	55,335,000	55,335,000	55,335,000	55,335,000	55,335,000	221,340,000
901~903	A	300,000,000	300,000,000	30,000,000	600,000,000	630,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252,000,000
904~906	B	299,000,000	299,000,000	29,900,000	598,000,000	627,90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251,160,000
907	C	273,500,000	273,500,000	27,350,000	547,000,000	574,350,000	57,435,000	57,435,000	57,435,000	57,435,000	57,435,000	57,435,000	229,740,000
908~909	B	286,500,000	286,500,000	28,650,000	573,000,000	601,650,000	60,165,000	60,165,000	60,165,000	60,165,000	60,165,000	60,165,000	240,660,000
910	B	284,000,000	284,000,000	28,400,000	568,000,000	596,40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238,560,000
911~913	A	284,500,000	284,500,000	28,450,000	569,000,000	597,450,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238,980,000
914,916	A	264,500,000	264,500,000	26,450,000	529,000,000	555,450,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222,180,000
915	B	263,500,000	263,500,000	26,350,000	527,000,000	553,350,000	55,335,000	55,335,000	55,335,000	55,335,000	55,335,000	55,335,000	221,340,000
1001~1003	A	300,000,000	300,000,000	30,000,000	600,000,000	630,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252,000,000
1004~1006	B	299,000,000	299,000,000	29,900,000	598,000,000	627,90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251,160,000
1007	C	273,500,000	273,500,000	27,350,000	547,000,000	574,350,000	57,435,000	57,435,000	57,435,000	57,435,000	57,435,000	57,435,000	229,740,000
1008~1009	B	286,500,000	286,500,000	28,650,000	573,000,000	601,650,000	60,165,000	60,165,000	60,165,000	60,165,000	60,165,000	60,165,000	240,660,000
1010	B	284,000,000	284,000,000	28,400,000	568,000,000	596,40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238,560,000
1011~1013	A	284,500,000	284,500,000	28,450,000	569,000,000	597,450,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238,980,000
1014,1016	A	264,500,000	264,500,000	26,450,000	529,000,000	555,450,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55,545,000	222,180,000
1015	B	263,500,000	263,500,000	26,350,000	527,000,000	553,350,000	55,335,000	55,335,000	55,335,000	55,335,000	55,335,000	55,335,000	221,340,000

■ 근린생활시설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부가가치세포함]

호수	전용면적	층별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가	총분양가	계약금 10% 계약시	1회차(자납) 10% 2022-03-15	2회차 10% 2022-03-20	3회차 10% 2022-06-20	4회차 10% 2023-03-20	5회차(자납) 10% 2023-05-20	잔금 40% 입주시
101	47.3231	20.6506	1.8142	21.7677	91.5556	11.0219	247,500,000	247,500,000	24,750,000	495,000,000	519,750,000	51,975,000	51,975,000	51,975,000	51,975,000	51,975,000	51,975,000	207,900,000
102	44.4150	19.3820	1.7025	20.4303	85.9298	10.3449	227,000,000	227,000,000	22,700,000	454,000,000	476,70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47,670,000	190,680,000
103	44.4150	19.3820	1.7025	20.4303	85.9298	10.3449	226,000,000	226,000,000	22,600,000	452,000,000	474,600,000	47,460,000	47,460,000	47,460,000	47,460,000	47,460,000	47,460,000	189,840,000
104	44.4150	19.3820	1.7025	20.4303	85.9298	10.3449	226,000,000	226,000,000	22,600,000	452,000,000	474,600,000	47,460,000	47,460,000	47,460,000	47,460,000	47,460,000	47,460,000	189,840,000
105	44.4150	19.3820	1.7025	20.4303	85.9298	10.3449	226,000,000	226,000,000	22,600,000	452,000,000	474,600,000	47,460,000	47,460,000	47,460,000	47,460,000	47,460,000	47,460,000	189,840,000
106	121.3481	52.9543	4.6515	55.8184	234.7723	28.2636	466,000,000	466,000,000	46,600,000	932,000,000	978,600,000	97,860,000	97,860,000	97,860,000	97,860,000	97,860,000	97,860,000	391,440,000
107	40.8797	17.8392	1.5670	18.8041	79.0900	9.5214	251,000,000	251,000,000	25,100,000	502,000,000	527,100,000	52,710,000	52,710,000	52,710,000	52,710,000	52,710,000	52,710,000	210,840,000
108	43.7541	19.0936	1.6772	20.1263	84.6512	10.1909	274,000,000	274,000,000	27,400,000	548,000,000	575,400,000	57,540,000	57,540,000	57,540,000	57,540,000	57,540,000	57,540,000	230,160,000
109	44.4150	19.3820	1.7025	20.4303	85.9298	10.3449	275,500,000	275,500,000	27,550,000	551,000,000	578,550,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231,420,000
110	44.4150	19.3820	1.7025	20.4303	85.9298	10.3449	275,500,000	275,500,000	27,550,000	551,000,000	578,550,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231,420,000
111	44.4150	19.3820	1.7025	20.4303	85.9298	10.3449	275,500,000	275,500,000	27,550,000	551,000,000	578,550,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57,855,000	231,420,000
112	44.4150	19.3820	1.7025	20.4303	85.9298	10.3449	278,000,000	278,000,000	27,800,000	556,000,000	583,800,000	58,380,000	58,380,000	58,380,000	58,380,000	58,380,000	58,380,000	233,520,000
113	43.5690	19.0128	1.6701	20.0411	84.2930	10.1478	283,000,000	283,000,000	28,300,000	566,000,000	594,300,000	59,430,000	59,430,000	59,430,000	59,430,000	59,430,000	59,430,000	237,720,000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지역(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A-Type : 14실, B-Type : 13실, C-Type : 1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00분의 10이하 범위(근린생활시설 1실)에서 분양신고일(2022.01.14)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에서 1인당 1호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화성시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1.14) 현재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청약자에 포함합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총 분양금액은 층, 향, 위치 등을 감안하여 차등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위치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니 분양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안목치수선,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호실당 계약면적과 분양금액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전기실, 기계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면적증감에 대해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체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전체 층의 복도부분, ELEV.홀, 계단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은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점)지정개시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점)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점)지정개시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은 사업관계자(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권을 권리의무를 승계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②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동법 제10조 ②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도로 교통, 철도, 지하철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본 물건 계약 시 외국환거래규정,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을"이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공급일정 및 청약신청금
1) 공급일정

청약일시	청약장소	추첨 및 당첨자발표일시	당첨자선정 및 층, 호수 결정방법	계약일
2022년 01월 19일 10:00~18:00	분양홍보관	2022년 01월 22일 10:00	분양홍보관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호수를 무작위로 결정	2022년 01월 22일 10:00 이후

2) 청약신청금 및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계좌	금융기관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예금주
업무시설(오피스텔)	500만원	1010-2123-0248	수협은행	청약신청계좌에 무통장입금	(주)하나자산신탁
근린생활시설	500만원	1010-2123-0181			

• 청약 신청금은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은행 무통장 입금 시 청약 신청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와 청약신청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청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 시	• 청약신청서(분양홍보관에 비치) • 본인도장(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본인확인증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또는 배우자) • 청약신청금 납입 영수증(은행 무통장 입금시)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법인	• 청약신청서(분양홍보관에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청약신청금 납입 영수증(은행 무통장 입금시)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명의)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 구비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청약신청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분양홍보관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추첨일시 및 당첨자발표 : 2022년 01월 22일(토요일) (10:00) • 발표장소 : 분양홍보관 • 추첨 : 분양홍보관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층·호수를 무작위로 결정
• 유의사항 - 청약자의 착오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명단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 일시 : 2022년 01월 28일(금요일) 까지 순차적 지급 • 환불대상 : 낙첨자 및 당첨 후 미계약자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환불방법 - 청약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환불일 이후 자동이체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좌오류 및 환급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및 분양대금납부
1)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 2022년 01월 22일(토요일) (10:00 이후) • 계약장소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74-4 분양홍보관(전화번호 031-8091-0700)
2)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 청약신청접수증(영수증)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계약용) • 계약자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법인 계약 시	• 청약신청접수증(영수증) • 법인인감(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계약용)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계약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분양홍보관 비치)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발행기관에서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지정한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호수 및 계약자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지정한 분양 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예시 : 0501홍길동)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123-0310	(주)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번호는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잔금은 입주(점)지정개시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첨된 호수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착오납입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공지 예정 • 대출금액 : 업무시설(오피스텔) 분양금액의 최대 40% 한도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금액의 최대 30% 한도(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입주(점)지정개시일 전일까지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자 본인책임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납할인은 각 회차별 중도금을 계약자가 자납하는 경우 연 4.0%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분양가 총액에서 할인하고 잔금에서 공제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 될 경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 신용불량 등재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사업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금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되고, 대출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미계약분 수의계약 진행합니다.
•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분양모집은 건축허가 사항 및 계약 장소에 비치한 설계도서에 준하여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 귀책사유로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준공 예정일 : 2023년 12월
■ 입주(점)지정개시일 : 2024년 01월(사용승인 이후)
• 입주(점)지정개시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점)지정개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점)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임시사용승인일 포함) 미도래된 분양대금은 실입주(점)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단, 이 경우 입주예정일과 같은 달의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 일정 및 입주(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점)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2023년 11월(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개시일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일자는 별도로 통보합니다.

■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시행수탁자는 (주)하나자산신탁, 시행위탁자는 (주)힘찬건설, 시공사는 (주)하나건설산업, 분양대행사는 오피스텔 (주)에덴피앤디, 상업시설 (주)바른디벨롭먼트입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2항에 따라 임시규약을 작성하여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에 수분양자에게 제공합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현장여건과 오기 및 구조/성능/상품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이나 혹은 건축법 및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양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할 때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점)지정개시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해당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주(입점)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전자메일 주소(전자세금계산서 수령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무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및 세무사등 상담을 통하여 계약자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면적증감에 대해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면적기재는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표현됩니다.(단, 행정청의 업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명칭, 외부색채, 옥상조형물, 공개공지, 옥상정원 및 기타 계획 및 재료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현장 시공 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설계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도록 하며, 내부구조변경 등(건축물 총 연면적 3%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외부에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공지(소방통로), 조경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에는 일부 잔디, 식재, 시설물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협의 및 승인 없이 훼손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점)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할 수 없고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점)자가 부담해야 하며, 외부인의 통행 및 출입이 가능하므로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재료의 동등 수준으로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통신시설 신규 가입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사업지내 공개공지 및 조경물은 사용승인 후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 입니다.
• 분양홍보관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생산 납기 등 공정상의 문제, 제조회사의 도산, 신제품의 개발 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등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전시된 TV, 전자렌지, 세탁기, 건조기는 전시용품이며, 실제로 빌트인 무상공급 가전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FCU가 있으며, 전기용품으로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하이라이트 결합)설치가 됩니다. • 분양홍보관 내 건립세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FCU, 새시, 목창호, 강마루, 각종가구 및 스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마감은 동일하나 제조회사 및 외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1종 기계환기(강제 급, 배기)이며 관계법령 또는 준공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첨부)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 통보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 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회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내용 및 기둥의 유무, 크기 등은 형별, 호실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거쳐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며, 본 건물 업무시설(오피스텔) 냉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한 각 실 천정형 FCU로 시공되고 개별에어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한 바닥난방으로 시공됩니다.
• FCU 외 수분양자가 필요에 의해서 에어컨 개별 설치 시 관련 배관등 설비공사, 실외기설치공사, 전기공사 등의 추가공사는 수분양자가 개별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본인 호수 지정 시 분양홍보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공용시설물 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실에는 소방관련법령에 의거 소방시설(피난기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기둥 및 벽, 시설물 등의 간섭으로 차량 도어 개폐 시 불편할 수 있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요금 징수 및 주차장 운용 등은 입주민 자치회 및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관리할 사항으로 사업주체와는 무관 합니다.
• 쓰레기 수거는 지하 1층과 1층 재활용분리수거장 쓰레기 수거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 보관소 등 주민편의시설은 관리단 등의 구성 이후 입주(점)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 본 건물의 1층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일부 내부 및 1층 외부에는 보안 등의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될 예정인 바, 이로 인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의무화법의 시행에 따라 공용부 및 전용부 일부에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 벽체에는 전기용 세대분전함, 통신용 단자함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기능상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로인한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LEV.홀 및 계단실, 복도등은 소방법 기준에 의해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실은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이나 공용부 천정, 벽체 등에는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규격이나 위치 등은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인테리어공사를 할 경우 각종 배관, FCU, 각종 밸브 및 계기류, 기타 시설물 등의 점검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점검구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 복도창 및 오피스텔 전용부 외부창의 일부는 배연창 및 피난탈출용 창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6호라인, 13호라인의 거실창은 다른호실과 상이하게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됩니다.
• 주변건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은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에 설치된 설비 시설물(냉각탑, 휀 등), 엘리베이터 운행 등에 의해 일부 호수는 소음, 진동 및 전파방해가 발생 할 수 있고, 시설물 개수가 증감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분양홍보관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의 마감재료,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사진, 그림 포함) 및 분양홍보관 내 비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견본호수가 설치되지 않으니 허가도면 등을 통하여 마감자재, 창호타입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에 대한 영업업종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층별 권장업종으로 하여 점포별로 표시된 영업업종 또는 법으로 허용된 새로운 새 업종으로 개점하는 혐오시설 또는 주거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업종으로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개점 시 개점업종에 따른 모든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에 대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사항(영업허가, 용도변경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허가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의 용도변경은 관계 건축법령 안에서만 가능하며 당해 인허관청에서 문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점포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는 기본용량만 공급합니다. 이를 확인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이며, 추후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실별 최종마감은 천정=불연천정재, 바닥=시멘트 몰탈마감, 벽=경량 칸막이마감/콘크리트 면처리(마감없음) 상태 마감이며, 도시가스 각실별로 밸브설치, 냉난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한 각 실 천정형 FCU로(개별에어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예정이며, 급수는 밸브설치 마감, 배수구는 실당 1개소 설치하여 캡마감 예정입니다. 이설 및 연장공사는 수분양자 분으로 자세한 마감사항은 분양사무실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후드배관은 업무시설(오피스텔)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자는 간판 설치 시 관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을 설치는 통합간판설치를 권장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고시(화성시고시 제2019-233호, 2019.10.30.)'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준수하여 화성시청 관계부서(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의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단위호실 내,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자는 본 분양공고 및 유의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주요 사항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건축허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등 포함)에 따라 본 건축물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본 건축물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 건축물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보행자전용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친 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에 용지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학교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종교시설,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소음, 진동,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본 건축물 내 오피스텔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본 사업 오피스텔 거주 예정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통학용 버스를 임대하여 무상 운행할 예정이며, 무상 운영 기한은 "도보통학 가능 시점인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준공시"까지로 합니다.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분양사업자(주)힘찬건설)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통학용 버스의 운영·관리는 입주 후 입주민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규모, 운영·관리 방식 및 추가 운영 기간 등을 분양사업자(주)힘찬건설)과 입주민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관련 구성전까지는 분양사업자(주)힘찬건설)가 관리합니다.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이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자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의 계획이 변경되어, 입주 시기에는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부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자 분양홈페이지상 VR동영상은 분양홍보관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품목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분양홍보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분양사업장,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물(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매도인 (주)하나자산신탁을 "갑", 매수인을 "을", 시행위탁자 (주)힘찬건설을 "병", 시공자 (주)하나건설산업을 "정"이라 칭하며,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병"과 시행수탁자인 "갑", 시공사인 "정" 및,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갑"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병"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병"와 시행수탁자 "갑"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계약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병"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병"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본 공급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갑"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병"와 시공사 "정"에게 있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사항
• 상기 공급대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분양함.
• 상기 공급대상인 건축물은 관련 법률에 의거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과 시행위탁자인 (주)힘찬건설 간에 2021년 08월 26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업지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주)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서울080071(2013.12.24.),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화성시청 건축과(2021-건축과-신축허가-1199) 2021년 11월 10일(최초 건축허가 완료)

■ 사업주체 현황

구분	회사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시행위탁사	(주)힘찬건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0, 302(호계동, 한화생명평촌사옥)	031-344-0011	130-86-34159
시공사	(주)하나건설산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0, 13층(호계동, 한화생명보험(주)평촌사옥)	031-340-4113	138-81-99388
시행수탁사	(주)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사옥)	02-3287-4741	214-86-34082
감리자	(주)에스앤에스 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16, 미켈란147빌딩 2101호	02-558-3913	120-87-56925
분양대행사 (업무시설(오피스텔))	(주)에덴피앤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36층 3605호(목동, 현대41타워)	02-6092-0707	142-81-65932
분양대행사 (근린생활시설)	(주)바른디벨롭먼트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90, 311호 (풍산동, 로얄팰리스 테크노1차)	1599-8854	499-87-01670

■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74-4 분양홍보관 ■ 분양문의 : 전화번호 031-8091-0700 ■ 홈페이지 : http://www.동탄역헤리움센트럴.com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분양사무실 및 본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2차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코로나-19 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 www.동탄역헤리움센트럴.com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제한, 축소운영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2차」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체온 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로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인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및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지침 및 진행요원의 안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2.01.14) 기준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분양이 적용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1.14) 현재 화성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거주자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화성시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1.14) 현재 화성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만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 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시청 건축과 2022년 01월 14일[2022-건축과-분양신고-5]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2021-건축과-신축허가-1200] ■ 시행수탁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관리형토지신탁)
■ 시행위탁자 : 주식회사 힘찬건설 ■ 시공사 : 주식회사 하나건설산업 ■ 분양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반 1024-5번지(동탄2신도시 일반상업용지 9-5BL)
■ 지역별, 지구별, 구역용도 : 일반상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탄2신도시지구) ■ 대지면적 : 2,245㎡ ■ 연면적 : 19,806.8747㎡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 4층~지하 1층(주차장, 기계실 등),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지상 10층(업무시설(오피스텔))
■ 공급규모 : 업무시설(오피스텔) 144실, 근린생활시설 19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 주차대수 : 총 155대(법정기준 153대)
■ 내진설계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KDS410000:2019)에 따라 설계 되었고,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표기 MMI등급 진도7(0.202G)으로 산정됩니다.
본 시설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입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부가가치세포함]

타입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분양호실수	해당층수
A	59.9237	21.7363	5.6443	34.2241	121.5284	13.7469	90	2~10층
B	63.7638	23.1292	6.0060	36.4173	129.3163	14.6279	27	2~10층
C	69.4535	25.1930	6.5420	39.6668	140.8553	15.9331	18	2~10층
D	63.0178	22.8586	5.9358	35.9912	127.8034	14.4567	9	2~10층

[단위 : 원]

호수	타입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가	총분양가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회차(10%) 2022-03-20	2회차(10%) 2022-06-20	3회차(10%) 2022-09-20	4회차(10%) 2023-03-20	5회차(10%)-자납 2023-05-20	잔금 40% 입주시
201	C	350,370,000	336,630,000	33,663,000	687,000,000	720,663,000	72,066,300	72,066,300	72,066,300	72,066,300	72,066,300	72,066,300	288,265,200
202~206	A	292,230,000	280,770,000	28,077,000	573,000,000	601,077,000	60,107,700	60,107,700	60,107,700	60,107,700	60,107,700	60,107,700	240,430,800
207	D	266,220,000	255,780,000	25,578,000	522,000,000	547,578,000	54,757,800	54,757,800	54,757,800	54,757,800	54,757,800	54,757,800	219,031,200
208~212	A	276,420,000	265,580,000	26,558,000	542,000,000	568,558,000	56,855,800	56,855,800	56,855,800	56,855,800	56,855,800	56,855,800	227,423,200
213	C	335,070,000	321,930,000	32,193,000	657,000,000	689,193,000	68,919,300	68,919,300	68,919,300	68,919,300	68,919,300	68,919,300	275,677,200
214~216	B	299,370,000	287,630,000	28,763,000	587,000,000	615,763,000	61,576,300	61,576,300	61,576,300	61,576,300	61,576,300	61,576,300	246,305,200
301	C	353,940,000	340,060,000	34,006,000	694,000,000	728,006,000	72,800,600	72,800,600	72,800,600	72,800,600	72,800,600	72,800,600	291,202,400
302~306	A	295,290,000	283,710,000	28,371,000	579,000,000	607,371,000	60,737,100	60,737,100	60,737,100	60,737,100	60,737,100	60,737,100	242,948,400
307	D	269,280,000	258,720,000	25,872,000	528,000,000	553,872,000	55,387,200	55,387,200	55,387,200	55,387,200	55,387,200	55,387,200	221,548,800
308~312	A	279,480,000	268,520,000	26,852,000	548,000,000	574,852,000	57,485,200	57,485,200	57,485,200	57,485,200	57,485,200	57,485,200	229,940,800
313	C	338,640,000	325,360,000	32,536,000	664,000,000	696,536,000	69,653,600	69,653,600	69,653,600	69,653,600	69,653,600	69,653,600	278,614,400
314~316	B	302,430,000	290,570,000	29,057,000	593,000,000	622,057,000	62,205,700	62,205,700	62,205,700	62,205,700	62,205,700	62,205,700	248,822,800
401	C	357,510,000	343,490,000	34,349,000	701,000,000	735,349,000	73,534,900	73,534,900	73,534,900	73,534,900	73,534,900	73,534,900	294,139,600
402~406	A	298,350,000	286,650,000	28,665,000	585,000,000	613,665,000	61,366,500	61,366,500	61,366,500	61,366,500	61,366,500	61,366,500	245,466,000
407	D	272,340,000	261,660,000	26,166,000	534,000,000	560,166,000	56,016,600	56,016,600	56,016,600	56,016,600	56,016,600	56,016,600	224,066,400
408~412	A	282,540,000	271,460,000	27,146,000	554,000,000	581,146,000	58,114,600	58,114,600	58,114,600	58,114,600	58,114,600	58,114,600	232,458,400
413	C	342,210,000	328,790,000	32,879,000	671,000,000	703,879,000	70,387,900	70,387,900	70,387,900	70,387,900	70,387,900	70,387,900	281,551,600
414~416	B	305,490,000	293,510,000	29,351,000	599,000,000	628,351,000	62,835,100	62,835,100	62,835,100	62,835,100	62,835,100	62,835,100	251,340,400
501	C	361,080,000	346,920,000	34,692,000	708,000,000	742,692,000	74,269,200	74,269,200	74,269,200	74,269,200	74,269,200	74,269,200	297,076,800
502~506	A	301,410,000	289,590,000	28,959,000	591,000,000	619,959,000	61,995,900	61,995,900	61,995,900	61,995,900	61,995,900	61,995,900	247,983,600
507	D	275,400,000	264,600,000	26,460,000	540,000,000	566,460,000	56,646,000	56,646,000	56,646,000	56,646,000	56,646,000	56,646,000	226,584,000
508~512	A	285,600,000	274,400,000	27,440,000	560,000,000	587,440,000	58,744,000	58,744,000	58,744,000	58,744,000	58,744,000	58,744,000	234,976,000
513	C	345,780,000	332,220,000	33,222,000	678,000,000	711,222,000	71,122,200	71,122,200	71,122,200	71,122,200	71,122,200	71,122,200	284,488,800
514~516	B	308,550,000	296,450,000	29,645,000	605,000,000	634,645,000	63,464,500	63,464,500	63,464,500	63,464,500	63,464,500	63,464,500	253,858,000
601	C	364,650,000	350,350,000	35,035,000	715,000,000	750,035,000	75,003,500	75,003,500	75,003,500	75,003,500	75,003,500	75,003,500	300,014,000
602~606	A	304,470,000	292,530,000	29,253,000	597,000,000	626,253,000	62,625,300	62,625,300	62,625,300	62,625,300	62,625,300	62,625,300	250,501,200
607	D	278,460,000	267,540,000	26,754,000	546,000,000	572,754,000	57,275,400	57,275,400	57,275,400	57,275,400	57,275,400	57,275,400	229,101,600
608~612	A	288,660,000	277,340,000	27,734,000	566,000,000	593,734,000	59,373,400	59,373,400	59,373,400	59,373,400	59,373,400	59,373,400	237,493,600
613	C	349,350,000	335,650,000	33,565,000	685,000,000	718,565,000	71,856,500	71,856,500	71,856,500	71,856,500	71,856,500	71,856,500	287,426,000
614~616	B	311,610,000	299,390,000	29,939,000	611,000,000	640,939,000	64,093,900	64,093,900	64,093,900	64,093,900	64,093,900	64,093,900	256,375,600
701	C	364,650,000	350,350,000	35,035,000	715,000,000	750,035,000	75,003,500	75,003,500	75,003,500	75,003,500	75,003,500	75,003,500	300,014,000
702~706	A	304,470,000	292,530,000	29,253,000	597,000,000	626,253,000	62,625,300	62,625,300	62,625,300	62,625,300	62,625,300	62,625,300	250,501,200
707	D	278,460,000	267,540,000	26,754,000	546,000,000	572,754,000	57,275,400	57,275,400	57,275,400	57,275,400	57,275,400	57,275,400	229,101,600
708~712	A	288,660,000	277,340,000	27,734,000	566,000,000	593,734,000	59,373,400	59,373,400	59,373,400	59,373,400	59,373,400	59,373,400	237,493,600
713	C	349,350,000	335,650,000	33,565,000	685,000,000	718,565,000	71,856,500	71,856,500	71,856,500	71,856,500	71,856,500	71,856,500	287,426,000
714~716	B	311,610,000	299,390,000	29,939,000	611,000,000	640,939,000	64,093,900	64,093,900	64,093,900	64,093,900	64,093,900	64,093,900	256,375,600
801	C	368,220,000	353,780,000	35,378,000	722,000,000	757,378,000	75,737,800	75,737,800	75,737,800	75,737,800	75,737,800	75,737,800	302,951,200
802~806	A	307,530,000	295,470,000	29,547,000	603,000,000	632,547,000	63,254,700	63,254,700	63,254,700	63,254,700	63,254,700	63,254,700	253,018,800
807	D	281,520,000	270,480,000	27,048,000	552,000,000	579,048,000	57,904,800	57,904,800	57,904,800	57,904,800	57,904,800	57,904,800	231,619,200
808~812	A	291,720,000	280,280,000	28,028,000	572,000,000	600,028,000	60,002,800	60,002,800	60,002,800	60,002,800	60,002,800	60,002,800	240,011,200
813	C	352,920,000	339,080,000	33,908,000	692,000,000	725,908,000	72,590,800	72,590,800	72,590,800	72,590,800	72,590,800	72,590,800	290,363,200
814~816	B	314,670,000	302,330,000	30,233,000	617,000,000	647,233,000	64,723,300	64,723,300	64,723,300	64,723,300	64,723,300	64,723,300	258,893,200
901	C	368,220,000	353,780,000	35,378,000	722,000,000	757,378,000	75,737,800	75,737,800	75,737,800	75,737,800	75,737,800	75,737,800	302,951,200
902~906	A	307,530,000	295,470,000	29,547,000	603,000,000	632,547,000	63,254,700	63,254,700	63,254,700	63,254,700	63,254,700	63,254,700	253,018,800
907	D	281,520,000	270,480,000	27,048,000	552,000,000	579,048,000	57,904,800	57,904,800	57,904,800	57,904,800	57,904,800	57,904,800	231,619,200
908~912	A	291,720,000	280,280,000	28,028,000	572,000,000	600,028,000	60,002,800	60,002,800	60,002,800	60,002,800	60,002,800	60,002,800	240,011,200
913	C	352,920,000	339,080,000	33,908,000	692,000,000	725,908,000	72,590,800	72,590,800	72,590,800	72,590,800	72,590,800	72,590,800	290,363,200
914~916	B	314,670,000	302,330,000	30,233,000	617,000,000	647,233,000	64,723,300	64,723,300	64,723,300	64,723,300	64,723,300	64,723,300	258,893,200
1001	C	368,220,000	353,780,000	35,378,000	722,000,000	757,378,000	75,737,800	75,737,800	75,737,800	75,737,800	75,737,800	75,737,800	302,951,200
1002~1006	A	307,530,000	295,470,000	29,547,000	603,000,000	632,547,000	63,254,700	63,254,700	63,254,700	63,254,700	63,254,700	63,254,700	253,018,800
1007	D	281,520,000	270,480,000	27,048,000	552,000,000	579,048,000	57,904,800	57,904,800	57,904,800	57,904,800	57,904,800	57,904,800	231,619,200
1008~1012	A	291,720,000	280,280,000	28,028,000	572,000,000	600,028,000	60,002,800	60,002,800	60,002,800	60,002,800	60,002,800	60,002,800	240,011,200
1013	C	352,920,000	339,080,000	33,908,000	692,000,000	725,908,000	72,590,800	72,590,800	72,590,800	72,590,800	72,590,800	72,590,800	290,363,200
1014~1016	B	314,670,000	302,330,000	30,233,000	617,000,000	647,233,000	64,723,300	64,723,300	64,723,300	64,723,300	64,723,300	64,723,300	258,893,200

■ 근린생활시설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부가가치세포함]

호수	전용면적	층별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가	총분양가	계약금 10% 계약시	1회차(자납) 10% 2022-03-15	2회차 10% 2022-03-20	3회차 10% 2022-06-20	4회차 10% 2023-03-20	5회차(자납) 10% 2023-05-20	잔금 40% 입주시
101호	44.5997	12.1756	3.6557	27.9398	88.3708	10.2315	312,630,000	300,370,000	30,037,000	613,000,000	643,037,000	64,303,700	64,303,700	64,303,700	64,303,700	64,303,700	64,303,700	257,214,800
102호	45.8691	12.5222	3.7597	28.7350	90.8860	10.5227	278,970,000	268,030,000	26,803,000	547,000,000	573,803,000	57,380,300	57,380,300	57,380,300	57,380,300	57,380,300	57,380,300	229,521,200
103호	44.4150	12.1252	3.6405	27.8241	88.0048	10.1891	259,590,000	249,410,000	24,941,000	509,000,000	533,941,000	53,394,100	53,394,100	53,394,100	53,394,100	53,394,100	53,394,100	213,576,400
104호	44.4150	12.1252	3.6405	27.8241	88.0048	10.1891	251,430,000	241,570,000	24,157,000	493,000,000	517,157,000	51,715,700	51,715,700	51,715,700	51,715,700	51,715,700	51,715,700	206,862,800
105호	44.4150	12.1252	3.6405	27.8241	88.0048	10.1891	248,370,000	238,630,000	23,863,000	487,000,000	510,863,000	51,086,300	51,086,300	51,086,300	51,086,300	51,086,300	51,086,300	204,345,200
106호	44.4150	12.1252	3.6405	27.8241	88.0048	10.1891	248,370,000	238,630,000	23,863,000	487,000,000	510,863,000	51,086,300	51,086,300	51,086,300	51,086,300	51,086,300	51,086,300	204,345,200
107호	42.5644	11.6200	3.4888	26.6647	84.3379	9.7646	251,430,000	241,570,000	24,157,000	493,000,000	517,157,000	51,715,700	51,715,700	51,715,700	51,715,700	51,715,700	51,715,700	206,862,800
108호	45.8118	12.5061	3.7554	28.6987	90.7720	10.5099	307,020,000	294,980,000	29,498,000	602,000,000	631,498,000	63,149,800	63,149,800	63,149,800	63,149,800	63,149,800	63,149,800	252,599,200
109호	40.5816	11.0787	3.3263	25.4226	80.4092	9.3097	282,030,000	270,970,000	27,097,000	553,000,000	580,097,000	58,009,700	58,009,700	58,009,700	58,009,700	58,009,700	58,009,700	232,038,800
110호	44.4150	12.1252	3.6405	27.8241	88.0048	10.1891	302,940,000	291,060,000	29,106,000	594,000,000	623,106,000	62,310,600	62,310,600	62,310,600	62,310,600	62,310,600	62,310,600	249,242,400
111호	44.4150	12.1252	3.6405	27.8241	88.0048	10.1891	302,940,000	291,060,000	29,106,000	594,000,000	623,106,000	62,310,600	62,310,600	62,310,600	62,310,600	62,310,600	62,310,600	249,242,400
112호	44.4150	12.1252	3.6405	27.8241	88.0048	10.1891	302,940,000	291,060,000	29,106,000	594,000,000	623,106,000	62,310,600	62,310,600	62,310,600	62,310,600	62,310,600	62,310,600	249,242,400
113호	44.4150	12.1252	3.6405	27.8241	88.0048	10.1891	306,000,000	294,000,000	29,400,000	600,000,000	629,40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62,940,000	251,760,000
114호	45.8691	12.5222	3.7597	28.7350	90.8860	10.5227	318,240,000	305,760,000	30,576,000	624,000,000	654,576,000	65,457,600	65,457,600	65,457,600	65,457,600	65,457,600	65,457,600	261,830,400
115호	44.5743	12.1687	3.6536	27.9238	88.3204	10.2257	323,340,000	310,660,000	31,066,000	634,000,000	665,066,000	66,506,600	66,506,600	66,506,600	66,506,600	66,506,600	66,506,600	266,026,400
116호	47.4673	12.9585	3.8907	29.7362	94.0527	10.8893	316,200,000	303,800,000	30,380,000	620,000,000	650,380,000	65,038,000	65,038,000	65,038,000	65,038,000	65,038,000	65,038,000	260,152,000
117호	46.9428	12.8153	3.8477	29.4076	93.0134	10.7690	311,100,000	298,900,000	29,890,000	610,000,000	639,890,000	63,989,000	63,989,000	63,989,000	63,989,000	63,989,000	63,989,000	255,956,000
118호	46.9428	12.8153	3.8477	29.4076	93.0134	10.7690	311,100,000	298,900,000	29,890,000	610,000,000	639,890,000	63,989,000	63,989,000	63,989,000	63,989,000	63,989,000	63,989,000	255,956,000
119호	47.4673	12.9585	3.8907	29.7362	94.0527	10.8893	316,200,000	303,800,000	30,380,000	620,000,000	650,380,000	65,038,000	65,038,000	65,038,000	65,038,000	65,038,000	65,038,000	260,152,000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지역(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A-Type : 18실, B-Type : 5실, C-Type : 3실, D-Type : 2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00분의 10이하 범위(근린생활시설 2실)에서 분양신고일(2022.01.14)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에서 1인당 1호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화성시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1.14) 현재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청약자에 포함합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총 분양금액은 층, 향, 위치 등을 감안하여 차등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위치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니 분양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안목치수선,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호실당 계약면적과 분양금액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전기실, 기계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면적증감에 대해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체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전체 층의 복도부분, ELEV.홀, 계단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은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점)지정개시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점)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점)지정개시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은 사업관계자(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권을 권리의무를 승계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②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동법 제10조 ②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도로 교통, 철도, 지하철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본 물건 계약 시 외국환거래규정,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을"이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공급일정 및 청약신청금
1) 공급일정

청약일시	청약장소	추첨 및 당첨자발표일시	당첨자선정 및 층, 호수 결정방법	계약일
2022년 01월 19일 10:00~18:00	분양홍보관	2022년 01월 22일 10:00	분양홍보관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호수를 무작위로 결정	2022년 01월 22일 10:00 이후

2) 청약신청금 및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계좌	금융기관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예금주
업무시설(오피스텔)	500만원	1010-2122-9487	수협은행	청약신청계좌에 무통장입금	(주)하나자산신탁
근린생활시설	500만원	1010-2122-9468			

• 청약 신청금은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은행 무통장 입금 시 청약 신청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와 청약신청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청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 시	• 청약신청서(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 본인도장(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본인확인증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또는 배우자) • 청약신청금 납입 영수증(은행 무통장 입금시)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법인	• 청약신청서(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청약신청금 납입 영수증(은행 무통장 입금시)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명의)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 구비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청약신청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추첨일시 및 당첨자발표 : 2022년 01월 22일(토요일) (10:00) • 발표장소 : 당사 분양홍보관
• 추첨 : 당사 분양홍보관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층·호수를 무작위로 결정
• 유의사항 - 청약자의 착오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명단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 일시 : 2022년 01월 28일(금요일) 까지 순차적 지급 • 환불대상 : 낙첨자 및 당첨 후 미계약자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환불방법 - 청약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환불일 이후 자동이체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좌오류 및 환급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 및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및 분양대금납부
1)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 2022년 01월 22일(토요일) (10:00 이후) • 계약장소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74-4 분양홍보관(전화번호 031-8091-0700)
2)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 청약신청접수증(영수증)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계약용) • 계약자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법인 계약 시	• 청약신청접수증(영수증) • 법인인감(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계약용)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계약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분양홍보관 비치)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발행기관에서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지정한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호수 및 계약자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지정한 분양 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예시 : 0501홍길동)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122-9511	(주)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번호는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잔금은 입주(점)지정개시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첨된 호수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착오납입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공지 예정 • 대출금액 : 업무시설(오피스텔) 분양금액의 최대 40% 한도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금액의 최대 30% 한도(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입주(점)지정개시일 전일까지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자 본인책임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납할인은 각 회차별 중도금을 계약자가 자납하는 경우 연 4.0%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분양가 총액에서 할인하고 잔금에서 공제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 될 경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 신용불량 등재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사업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금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되고, 대출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미계약분 수의계약 진행합니다.
•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분양모집은 건축허가 사항 및 계약 장소에 비치한 설계도서에 준하여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 귀책사유로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준공 예정일 : 2023년 12월
■ 입주(점)지정개시일 : 2024년 01월 (사용승인 이후)
• 입주(점)지정개시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점)지정개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점)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임시사용승인일 포함) 미도래된 분양대금은 실입주(점)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단, 이 경우 입주예정일과 같은 달의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 일정 및 입주(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점)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2023년 11월(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개시일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일자는 별도로 통보합니다.

■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시행수탁자는 (주)하나자산신탁, 시행위탁자는 (주)힘찬건설, 시공사는 (주)하나건설산업, 분양대행사는 오피스텔 (주)에덴피앤디, 상업시설 (주)바른디벨롭먼트입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2항에 따라 임시규약을 작성하여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에 수분양자에게 제공합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현장여건과 오기 및 구조/성능/상품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이나 혹은 건축법 및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양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할 때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점)지정개시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해당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주(입점)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전자메일 주소(전자세금계산서 수령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무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및 세무사등 상담을 통하여 계약자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면적증감에 대해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면적기재는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표현됩니다.(단, 행정청의 업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명칭, 외부색채, 옥상조형물, 공개공지, 옥상정원 및 기타 계획 및 재료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현장 시공 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설계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도록 하며, 내부구조변경 등(건축물 총 연면적 3%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분양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외부에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공지(소방통로), 조경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에는 일부 잔디, 식재, 시설물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협의 및 승인 없이 훼손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점)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할 수 없고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점)자가 부담해야 하며, 외부인의 통행 및 출입이 가능하므로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재료의 동등 수준으로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통신시설 신규 가입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사업지내 공개공지 및 조경물은 사용승인 후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 입니다.
• 분양홍보관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생산 납기 등 공정상의 문제, 제조회사의 도산, 신제품의 개발 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등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전시된 TV, 전자렌지, 세탁기, 건조기는 전시용품이며, 실제로 빌트인 무상공급 가전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FCU가 있으며, 전기용품으로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하이라이트 결합)설치가 됩니다. • 분양홍보관 내 건립세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FCU, 새시, 목창호, 강마루, 각종가구 및 스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마감은 동일하나 제조회사 및 외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1종 기계환기(강제 급, 배기)이며 관계법령 또는 준공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첨부)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 통보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 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회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내용 및 기둥의 유무, 크기 등은 형별, 호실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거쳐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며, 본 건물 업무시설(오피스텔) 냉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한 각 실 천정형 FCU로 시공되고 개별에어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한 바닥난방으로 시공됩니다.
• FCU 외 수분양자가 필요에 의해서 에어컨 개별 설치 시 관련 배관등 설비공사, 실외기설치공사, 전기공사 등의 추가공사는 수분양자가 개별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본인 호수 지정 시 분양홍보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공용시설물 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실에는 소방관련법령에 의거 소방시설(피난기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기둥 및 벽, 시설물 등의 간섭으로 차량 도어 개폐 시 불편할 수 있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요금 징수 및 주차장 운용 등은 입주민 자치회 및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관리할 사항으로 사업주체와는 무관 합니다.
• 쓰레기 수거는 지하 1층과 1층 재활용분리수거장 쓰레기 수거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 보관소 등 주민편의시설은 관리단 등의 구성 이후 입주(점)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 본 건물의 1층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일부 내부 및 1층 외부에는 보안 등의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될 예정인 바, 이로 인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의무화법의 시행에 따라 공용부 및 전용부 일부에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 벽체에는 전기용 세대분전함, 통신용 단자함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기능상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로인한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LEV.홀 및 계단실, 복도등은 소방법 기준에 의해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실은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이나 공용부 천정, 벽체 등에는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규격이나 위치 등은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인테리어공사를 할 경우 각종 배관, FCU, 각종 밸브 및 계기류, 기타 시설물 등의 점검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점검구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 복도창 및 오피스텔 전용부 외부창의 일부는 배연창 및 피난탈출용 창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C타입 1호라인, 13호라인의 거실창은 다른호실과 상이하게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됩니다. • 주변건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은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에 설치된 설비 시설물(냉각탑, 휀 등), 엘리베이터 운행 등에 의해 일부 호수는 소음, 진동 및 전파방해가 발생 할 수 있고, 시설물 개수가 증감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분양홍보관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의 마감재료,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사진, 그림 포함) 및 분양홍보관 내 비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견본호수가 설치되지 않으니 허가도면 등을 통하여 마감자재, 창호타입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에 대한 영업업종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층별 권장업종으로 하여 점포별로 표시된 영업업종 또는 법으로 허용된 새로운 새 업종으로 개점하는 혐오시설 또는 주거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업종으로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개점 시 개점업종에 따른 모든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에 대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사항(영업허가, 용도변경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허가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의 용도변경은 관계 건축법령 안에서만 가능하며 당해 인허관청에서 문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점포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는 기본용량만 공급합니다. 이를 확인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이며, 추후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실별 최종마감은 천정=불연천정재, 바닥=시멘트 몰탈마감, 벽=경량 칸막이마감/콘크리트 면처리(마감없음) 상태 마감이며, 도시가스 각실별로 밸브설치, 냉난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한 각 실 천정형 FCU로(개별에어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예정이며, 급수는 밸브설치 마감, 배수구는 실당 1개소 설치하여 캡마감 예정입니다. 이설 및 연장공사는 수분양자 분으로 자세한 마감사항은 분양사무실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후드배관은 업무시설(오피스텔)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자는 간판 설치 시 관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을 설치는 통합간판설치를 권장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고시(화성시고시 제2019-233호, 2019.10.30.)'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준수하여 화성시청 관계부서(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의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단위호실 내,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자는 본 분양공고 및 유의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주요 사항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건축허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등 포함)에 따라 본 건축물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본 건축물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 건축물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보행자전용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친 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에 용지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학교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종교시설,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소음, 진동,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본 건축물 내 오피스텔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본 사업 오피스텔 거주 예정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통학용 버스를 임대하여 무상 운행할 예정이며, 무상 운영 기한은 "도보통학 가능 시점인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준공시"까지로 합니다.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분양사업자(주)힘찬건설)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통학용 버스의 운영·관리는 입주 후 입주민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규모, 운영·관리 방식 및 추가 운영 기간 등을 분양사업자(주)힘찬건설)과 입주민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관련 구성전까지는 분양사업자(주)힘찬건설)가 관리합니다.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이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자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의 계획이 변경되어, 입주 시기에는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부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자 분양홈페이지상 VR동영상은 분양홍보관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품목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분양홍보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분양사업장,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물(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매도인 (주)하나자산신탁을 "갑", 매수인을 "을", 시행위탁자 (주)힘찬건설을 "병", 시공자 (주)하나건설산업을 "정"이라 칭하며,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병"과 시행수탁자인 "갑", 시공사인 "정" 및,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갑"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병"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병"와 시행수탁자 "갑"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계약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병"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병"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본 공급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갑"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병"와 시공사 "정"에게 있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사항
• 상기 공급대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분양함.
• 상기 공급대상인 건축물은 관련 법률에 의거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과 시행위탁자인 (주)힘찬건설 간에 2021년 08월 26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업지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주)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서울080071(2013.12.24.),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화성시청 건축과(2021-건축과-신축허가-1200) 2021년 11월 10일(최초 건축허가 완료)

■ 사업주체 현황

구분	회사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시행위탁사	(주)힘찬건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0, 302(호계동, 한화생명평촌사옥)	031-344-0011	130-86-34159
시공사	(주)하나건설산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0, 13층(호계동, 한화생명보험(주)평촌사옥)	031-340-4113	138-81-99388
시행수탁사	(주)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사옥)	02-3287-4741	214-86-34082
감리자	(주)에스앤에스 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16, 미켈란147빌딩 2101호	02-558-3913	120-87-56925
분양대행사 (업무시설(오피스텔))	(주)에덴피앤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36층 3605호(목동, 현대41타워)	02-6092-0707	142-81-65932
분양대행사 (근린생활시설)	(주)바른디벨롭먼트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90, 311호 (풍산동, 로얄팰리스 테크노1차)	1599-8854	499-87-01670

■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74-4 분양홍보관 ■ 분양문의 : 전화번호 031-8091-0700 ■ 홈페이지 : http://www.동탄역헤리움센트럴.com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분양사무실 및 본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3차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코로나-19 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 www.동탄역헤리움센트럴.com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제한, 축소운영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3차」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체온 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로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인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및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지침 및 진행요원의 안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2.01.14) 기준입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분양이 적용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1.14) 현재 화성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거주자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화성시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1.14) 현재 화성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만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 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시청 건축과 2022년 01월 14일[2022-건축과-분양신고-6]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2021-건축과-신축허가-1196] ■ 분양사업자 : 주식회사 힘찬건설 ■ 시공사 : 주식회사 하나건설산업
■ 분양관리신탁사, 자금관리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분양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1025번지(동탄2신도시 일반상업용지 15-1BL)
■ 지역별, 지구별, 구역용도 : 일반상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동탄2신도시지구) ■ 대지면적 : 2,660㎡ ■ 연면적 : 23,672.2116㎡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 4층~지하 1층(주차장, 기계실 등),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지상 10층(업무시설(오피스텔))
■ 공급규모 : 업무시설(오피스텔) 162실, 근린생활시설 23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 주차대수 : 총 202대(법정기준 174대)
■ 내진설계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KDS410000:2019)에 따라 설계 되었고,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표기 MMI등급 진도7(0.202G)으로 산정됩니다.
본 시설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입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타입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분양호실수	해당층수
A	59.9237	22.6097	3.8347	37.2519	123.6200	13.8226	72	2~10층
B	64.4037	24.3000	4.1214	40.0369	132.8620	14.8560	54	2~10층
C	72.6510	27.4118	4.6492	45.1639	149.8759	16.7584	35	2~10층
C-1	72.6510	27.4128	4.6462	45.1603	149.8703	16.7625	1	10층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호수	타입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가	총분양가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회차(10%) 2022-03-20	2회차(10%) 2022-06-20	3회차(10%) 2022-09-20	4회차(10%) 2023-03-20	5회차(10%)-자납 2023-05-20	잔금 40% 입주시
201	C	383,760,000	354,240,000	35,424,000	738,000,000	773,424,000	77,342,400	77,342,400	77,342,400	77,342,400	77,342,400	77,342,400	309,369,600
202~203	A	304,200,000	280,800,000	28,080,000	585,000,000	613,080,000	61,308,000	61,308,000	61,308,000	61,308,000	61,308,000	61,308,000	245,232,000
204~205	A	301,600,000	278,400,000	27,840,000	580,000,000	607,840,000	60,784,000	60,784,000	60,784,000	60,784,000	60,784,000	60,784,000	243,136,000
206	C	373,360,000	344,640,000	34,464,000	718,000,000	752,464,000	75,246,400	75,246,400	75,246,400	75,246,400	75,246,400	75,246,400	300,985,600
207~209	B	303,680,000	280,320,000	28,032,000	584,000,000	612,032,0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244,812,800
210	C	357,760,000	330,240,000	33,024,000	688,000,000	721,024,000	72,102,400	72,102,400	72,102,400	72,102,400	72,102,400	72,102,400	288,409,600
211~212	A	285,480,000	263,520,000	26,352,000	549,000,000	575,352,000	57,535,200	57,535,200	57,535,200	57,535,200	57,535,200	57,535,200	230,140,800
213~214	A	288,080,000	265,920,000	26,592,000	554,000,000	580,592,000	58,059,200	58,059,200	58,059,200	58,059,200	58,059,200	58,059,200	232,236,800
215	C	381,160,000	351,840,000	35,184,000	733,000,000	768,184,000	76,818,400	76,818,400	76,818,400	76,818,400	76,818,400	76,818,400	307,273,600
216~218	B	328,640,000	303,360,000	30,336,000	632,000,000	662,336,000	66,233,600	66,233,600	66,233,600	66,233,600	66,233,600	66,233,600	264,934,400
301	C	387,400,000	357,600,000	35,760,000	745,000,000	780,760,000	78,076,000	78,076,000	78,076,000	78,076,000	78,076,000	78,076,000	312,304,000
302~303	A	307,320,000	283,680,000	28,368,000	591,000,000	619,368,000	61,936,800	61,936,800	61,936,800	61,936,800	61,936,800	61,936,800	247,747,200
304~305	A	304,720,000	281,280,000	28,128,000	586,000,000	614,128,000	61,412,800	61,412,800	61,412,800	61,412,800	61,412,800	61,412,800	245,651,200
306	C	377,000,000	348,000,000	34,800,000	725,000,000	759,800,000	75,980,000	75,980,000	75,980,000	75,980,000	75,980,000	75,980,000	303,920,000
307~309	B	306,800,000	283,200,000	28,320,000	590,000,000	618,320,000	61,832,000	61,832,000	61,832,000	61,832,000	61,832,000	61,832,000	247,328,000
310	C	361,400,000	333,600,000	33,360,000	695,000,000	728,360,000	72,836,000	72,836,000	72,836,000	72,836,000	72,836,000	72,836,000	291,344,000
311~312	A	288,600,000	266,400,000	26,640,000	555,000,000	581,640,000	58,164,000	58,164,000	58,164,000	58,164,000	58,164,000	58,164,000	232,656,000
313~314	A	291,200,000	268,800,000	26,880,000	560,000,000	586,880,000	58,688,000	58,688,000	58,688,000	58,688,000	58,688,000	58,688,000	234,752,000
315	C	384,800,000	355,200,000	35,520,000	740,000,000	775,520,000	77,552,000	77,552,000	77,552,000	77,552,000	77,552,000	77,552,000	310,208,000
316~318	B	332,280,000	306,720,000	30,672,000	639,000,000	669,672,000	66,967,200	66,967,200	66,967,200	66,967,200	66,967,200	66,967,200	267,868,800
401	C	391,040,000	360,960,000	36,096,000	752,000,000	788,096,000	78,809,600	78,809,600	78,809,600	78,809,600	78,809,600	78,809,600	315,238,400
402~403	A	310,440,000	286,560,000	28,656,000	597,000,000	625,656,000	62,565,600	62,565,600	62,565,600	62,565,600	62,565,600	62,565,600	250,262,400
404~405	A	307,840,000	284,160,000	28,416,000	592,000,000	620,416,000	62,041,600	62,041,600	62,041,600	62,041,600	62,041,600	62,041,600	248,166,400
406	C	380,640,000	351,360,000	35,136,000	732,000,000	767,136,000	76,713,600	76,713,600	76,713,600	76,713,600	76,713,600	76,713,600	306,854,400
407~409	B	309,920,000	286,080,000	28,608,000	596,000,000	624,608,000	62,460,800	62,460,800	62,460,800	62,460,800	62,460,800	62,460,800	249,843,200
410	C	365,040,000	336,960,000	33,696,000	702,000,000	735,696,000	73,569,600	73,569,600	73,569,600	73,569,600	73,569,600	73,569,600	294,278,400
411~412	A	291,720,000	269,280,000	26,928,000	561,000,000	587,928,000	58,792,800	58,792,800	58,792,800	58,792,800	58,792,800	58,792,800	235,171,200
413~414	A	294,320,000	271,680,000	27,168,000	566,000,000	593,168,000	59,316,800	59,316,800	59,316,800	59,316,800	59,316,800	59,316,800	237,267,200
415	C	388,440,000	358,560,000	35,856,000	747,000,000	782,856,000	78,285,600	78,285,600	78,285,600	78,285,600	78,285,600	78,285,600	313,142,400
416~418	B	335,920,000	310,080,000	31,008,000	646,000,000	677,008,000	67,700,800	67,700,800	67,700,800	67,700,800	67,700,800	67,700,800	270,803,200
501	C	394,680,000	364,320,000	36,432,000	759,000,000	795,432,000	79,543,200	79,543,200	79,543,200	79,543,200	79,543,200	79,543,200	318,172,800
502~503	A	313,560,000	289,440,000	28,944,000	603,000,000	631,944,000	63,194,400	63,194,400	63,194,400	63,194,400	63,194,400	63,194,400	252,777,600
504~505	A	310,960,000	287,040,000	28,704,000	598,000,000	626,704,000	62,670,400	62,670,400	62,670,400	62,670,400	62,670,400	62,670,400	250,681,600
506	C	384,280,000	354,720,000	35,472,000	739,000,000	774,472,000	77,447,200	77,447,200	77,447,200	77,447,200	77,447,200	77,447,200	309,788,800
507~509	B	313,040,000	288,960,000	28,896,000	602,000,000	630,896,000	63,089,600	63,089,600	63,089,600	63,089,600	63,089,600	63,089,600	252,358,400
510	C	368,680,000	340,320,000	34,032,000	709,000,000	743,032,000	74,303,200	74,303,200	74,303,200	74,303,200	74,303,200	74,303,200	297,212,800
511~512	A	294,840,000	272,160,000	27,216,000	567,000,000	594,216,000	59,421,600	59,421,600	59,421,600	59,421,600	59,421,600	59,421,600	237,686,400
513~514	A	297,440,000	274,560,000	27,456,000	572,000,000	599,456,000	59,945,600	59,945,600	59,945,600	59,945,600	59,945,600	59,945,600	239,782,400
515	C	392,080,000	361,920,000	36,192,000	754,000,000	790,192,000	79,019,200	79,019,200	79,019,200	79,019,200	79,019,200	79,019,200	316,076,800
516~518	B	339,560,000	313,440,000	31,344,000	653,000,000	684,344,000	68,434,400	68,434,400	68,434,400	68,434,400	68,434,400	68,434,400	273,737,600
601	C	398,320,000	367,680,000	36,768,000	766,000,000	802,768,000	80,276,800	80,276,800	80,276,800	80,276,800	80,276,800	80,276,800	321,107,200
602~603	A	316,680,000	292,320,000	29,232,000	609,000,000	638,232,000	63,823,200	63,823,200	63,823,200	63,823,200	63,823,200	63,823,200	255,292,800
604~605	A	314,080,000	289,920,000	28,992,000	604,000,000	632,992,000	63,299,200	63,299,200	63,299,200	63,299,200	63,299,200	63,299,200	253,196,800
606	C	387,920,000	358,080,000	35,808,000	746,000,000	781,808,000	78,180,800	78,180,800	78,180,800	78,180,800	78,180,800	78,180,800	312,723,200
607~609	B	316,160,000	291,840,000	29,184,000	608,000,000	637,184,000	63,718,400	63,718,400	63,718,400	63,718,400	63,718,400	63,718,400	254,873,600
610	C	372,320,000	343,680,000	34,368,000	716,000,000	750,368,000	75,036,800	75,036,800	75,036,800	75,036,800	75,036,800	75,036,800	300,147,200
611~612	A	297,960,000	275,040,000	27,504,000	573,000,000	600,504,000	60,050,400	60,050,400	60,050,400	60,050,400	60,050,400	60,050,400	240,201,600
613~614	A	300,560,000	277,440,000	27,744,000	578,000,000	605,744,000	60,574,400	60,574,400	60,574,400	60,574,400	60,574,400	60,574,400	242,297,600
615	C	395,720,000	365,280,000	36,528,000	761,000,000	797,528,000	79,752,800	79,752,800	79,752,800	79,752,800	79,752,800	79,752,800	319,011,200
616~618	B	343,200,000	316,800,000	31,680,000	660,000,000	691,680,000	69,168,000	69,168,000	69,168,000	69,168,000	69,168,000	69,168,000	276,672,000
701	C	398,320,000	367,680,000	36,768,000	766,000,000	802,768,000	80,276,800	80,276,800	80,276,800	80,276,800	80,276,800	80,276,800	321,107,200
702~703	A	316,680,000	292,320,000	29,232,000	609,000,000	638,232,000	63,823,200	63,823,200	63,823,200	63,823,200	63,823,200	63,823,200	255,292,800
704~705	A	314,080,000	289,920,000	28,992,000	604,000,000	632,992,000	63,299,200	63,299,200	63,299,200	63,299,200	63,299,200	63,299,200	253,196,800
706	C	387,920,000	358,080,000	35,808,000	746,000,000	781,808,000	78,180,800	78,180,800	78,180,800	78,180,800	78,180,800	78,180,800	312,723,200
707~709	B	316,160,000	291,840,000	29,184,000	608,000,000	637,184,000	63,718,400	63,718,400	63,718,400	63,718,400	63,718,400	63,718,400	254,873,600
710	C	372,320,000	343,680,000	34,368,000	716,000,000	750,368,000	75,036,800	75,036,800	75,036,800	75,036,800	75,036,800	75,036,800	300,147,200
711~712	A	297,960,000	275,040,000	27,504,000	573,000,000	600,504,000	60,050,400	60,050,400	60,050,400	60,050,400	60,050,400	60,050,400	240,201,600
713~714	A	300,560,000	277,440,000	27,744,000	578,000,000	605,744,000	60,574,400	60,574,400	60,574,400	60,574,400	60,574,400	60,574,400	242,297,600
715	C	395,720,000	365,280,000	36,528,000	761,000,000	797,528,000	79,752,800	79,752,800	79,752,800	79,752,800	79,752,800	79,752,800	319,011,200
716~718	B	343,200,000	316,800,000	31,680,000	660,000,000	691,680,000	69,168,000	69,168,000	69,168,000	69,168,000	69,168,000	69,168,000	276,672,000
801	C	401,960,000	371,040,000	37,104,000	773,000,000	810,104,000	81,010,400	81,010,400	81,010,400	81,010,400	81,010,400	81,010,400	324,041,600
802~803	A	319,800,000	295,200,000	29,520,000	615,000,000	644,520,000	64,452,000	64,452,000	64,452,000	64,452,000	64,452,000	64,452,000	257,808,000
804~805	A	317,200,000	292,800,000	29,280,000	610,000,000	639,280,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255,712,000
806	C	391,560,000	361,440,000	36,144,000	753,000,000	789,144,000	78,914,400	78,914,400	78,914,400	78,914,400	78,914,400	78,914,400	315,657,600
807~809	B	319,280,000	294,720,000	29,472,000	614,000,000	643,472,000	64,347,200	64,347,200	64,347,200	64,347,200	64,347,200	64,347,200	257,388,800
810	C	375,960,000	347,040,000	34,704,000	723,000,000	757,704,000	75,770,400	75,770,400	75,770,400	75,770,400	75,770,400	75,770,400	303,081,600
811~812	A	301,080,000	277,920,000	27,792,000	579,000,000	606,792,000	60,679,200	60,679,200	60,679,200	60,679,200	60,679,200	60,679,200	242,716,800
813~814	A	303,680,000	280,320,000	28,032,000	584,000,000	612,032,0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244,812,800
815	C	399,360,000	368,640,000	36,864,000	768,000,000	804,864,000	80,486,400	80,486,400	80,486,400	80,486,400	80,486,400	80,486,400	321,945,600
816~818	B	346,840,000	320,160,000	32,016,000	667,000,000	699,016,000	69,901,600	69,901,600	69,901,600	69,901,600	69,901,600	69,901,600	279,606,400
901	C	401,960,000	371,040,000	37,104,000	773,000,000	810,104,000	81,010,400	81,010,400	81,010,400	81,010,400	81,010,400	81,010,400	324,041,600
902~903	A	319,800,000	295,200,000	29,520,000	615,000,000	644,520,000	64,452,000	64,452,000	64,452,000	64,452,000	64,452,000	64,452,000	257,808,000
904~905	A	317,200,000	292,800,000	29,280,000	610,000,000	639,280,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255,712,000
906	C	391,560,000	361,440,000	36,144,000	753,000,000	789,144,000	78,914,400	78,914,400	78,914,400	78,914,400	78,914,400	78,914,400	315,657,600
907~909	B	319,280,000	294,720,000	29,472,000	614,000,000	643,472,000	64,347,200	64,347,200	64,347,200	64,347,200	64,347,200	64,347,200	257,388,800
910	C	375,960,000	347,040,000	34,704,000	723,000,000	757,704,000	75,770,400	75,770,400	75,770,400	75,770,400	75,770,400	75,770,400	303,081,600
911~912	A	301,080,000	277,920,000	27,792,000	579,000,000	606,792,000	60,679,200	60,679,200	60,679,200	60,679,200	60,679,200	60,679,200	242,716,800
913~914	A	303,680,000	280,320,000	28,032,000	584,000,000	612,032,0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244,812,800
915	C	399,360,000	368,640,000	36,864,000	768,000,000	804,864,000	80,486,400	80,486,400	80,486,400	80,486,400	80,486,400	80,486,400	321,945,600
916~918	B	346,840,000	320,160,000	32,016,000	667,000,000	699,016,000	69,901,600	69,901,600	69,901,600	69,901,600	69,901,600	69,901,600	279,606,400
1001	C	401,960,000	371,040,000	37,104,000	773,000,000	810,104,000	81,010,400	81,010,400	81,010,400	81,010,400	81,010,400	81,010,400	324,041,600
1002~1003	A	319,800,000	295,200,000	29,520,000	615,000,000	644,520,000	64,452,000	64,452,000	64,452,000	64,452,000	64,452,000	64,452,000	257,808,000
1004~1005	A	317,200,000	292,800,000	29,280,000	610,000,000	639,280,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255,712,000
1006	C	391,560,000	361,440,000	36,144,000	753,000,000	789,144,000	78,914,400	78,914,400	78,914,400	78,914,400	78,914,400	78,914,400	315,657,600
1007~1009	B	319,280,000	294,720,000	29,472,000	614,000,000	643,472,000	64,347,200	64,347,200	64,347,200	64,347,200	64,347,200	64,347,200	257,388,800
1010	C	375,960,000	347,040,000	34,704,000	723,000,000	757,704,000	75,770,400	75,770,400	75,770,400	75,770,400	75,770,400	75,770,400	303,081,600
1011~1012	A	301,080,000	277,920,000	27,792,000	579,000,000	606,792,000	60,679,200	60,679,200	60,679,200	60,679,200	60,679,200	60,679,200	242,716,800
1013~1014	A	303,680,000	280,320,000	28,032,000	584,000,000	612,032,0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244,812,800
1015	C	399,360,000	368,640,000	36,864,000	768,000,000	804,864,000	80,486,400	80,486,400	80,486,400	80,486,400	80,486,400	80,486,400	321,945,600
1016~1018	B	346,840,000	320,160,000	32,016,000	667,000,000	699,016,000	69,901,600	69,901,600	69,901,600	69,901,600	69,901,600	69,901,600	279,606,400

■ 근린생활시설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부가가치세포함]

호수	전용면적	층별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가	총분양가	계약금 10% 계약시	1회차(자납) 10% 2022-03-15	2회차 10% 2022-03-20	3회차 10% 2022-06-20	4회차 10% 2023-03-20	5회차(자납) 10% 2023-05-20	잔금 40% 입주시
101	44.5240	11.3951	3.5655	27.7318	87.2164	10.2704	336,440,000	310,560,000	31,056,000	647,000,000	678,056,000	67,805,600	67,805,600	67,805,600	67,805,600	67,805,600	67,805,600	271,222,400
102	45.4353	11.6283	3.6385	28.2994	89.0015	10.4806	312,520,000	288,480,000	28,848,000	601,000,000	629,848,000	62,984,800	62,984,800	62,984,800	62,984,800	62,984,800	62,984,800	251,939,200
103	43.9950	11.2597	3.5232	27.4023	86.1802	10.1483	286,520,000	264,480,000	26,448,000	551,000,000	577,448,000	57,744,800	57,744,800	57,744,800	57,744,800	57,744,800	57,744,800	230,979,200
104	43.9950	11.2597	3.5232	27.4023	86.1802	10.1483	267,280,000	246,720,000	24,672,000	514,000,000	538,672,000	53,867,200	53,867,200	53,867,200	53,867,200	53,867,200	53,867,200	215,468,800
105	43.9950	11.2597	3.5232	27.4023	86.1802	10.1483	262,080,000	241,920,000	24,192,000	504,000,000	528,192,000	52,819,200	52,819,200	52,819,200	52,819,200	52,819,200	52,819,200	211,276,800
106	43.9950	11.2597	3.5232	27.4023	86.1802	10.1483	262,080,000	241,920,000	24,192,000	504,000,000	528,192,000	52,819,200	52,819,200	52,819,200	52,819,200	52,819,200	52,819,200	211,276,800
107	43.9950	11.2597	3.5232	27.4023	86.1802	10.1483	264,680,000	244,320,000	24,432,000	509,000,000	533,432,000	53,343,200	53,343,200	53,343,200	53,343,200	53,343,200	53,343,200	213,372,800
108	43.9950	11.2597	3.5232	27.4023	86.1802	10.1483	267,800,000	247,200,000	24,720,000	515,000,000	539,720,000	53,972,000	53,972,000	53,972,000	53,972,000	53,972,000	53,972,000	215,888,000
109	45.4353	11.6283	3.6385	28.2994	89.0015	10.4806	298,480,000	275,520,000	27,552,000	574,000,000	601,552,000	60,155,200	60,155,200	60,155,200	60,155,200	60,155,200	60,155,200	240,620,800
110	44.5240	11.3951	3.5655	27.7318	87.2164	10.2704	317,200,000	292,800,000	29,280,000	610,000,000	639,280,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63,928,000	255,712,000
111	50.8725	13.0198	4.0738	31.6863	99.6524	11.7347	342,680,000	316,320,000	31,632,000	659,000,000	690,632,000	69,063,200	69,063,200	69,063,200	69,063,200	69,063,200	69,063,200	276,252,800
112	43.5166	11.1372	3.4848	27.1043	85.2429	10.0380	330,200,000	304,800,000	30,480,000	635,000,000	665,480,000	66,548,000	66,548,000	66,548,000	66,548,000	66,548,000	66,548,000	266,192,000
113	44.5678	11.4063	3.5690	27.7591	87.3022	10.2805	324,480,000	299,520,000	29,952,000	624,000,000	653,952,000	65,395,200	65,395,200	65,395,200	65,395,200	65,395,200	65,395,200	261,580,800
114	43.1550	11.0447	3.4559	26.8791	84.5347	9.9546	311,480,000	287,520,000	28,752,000	599,000,000	627,752,000	62,775,200	62,775,200	62,775,200	62,775,200	62,775,200	62,775,200	251,100,800
115	43.1550	11.0447	3.4559	26.8791	84.5347	9.9546	303,680,000	280,320,000	28,032,000	584,000,000	612,032,0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244,812,800
116	43.1550	11.0447	3.4559	26.8791	84.5347	9.9546	303,680,000	280,320,000	28,032,000	584,000,000	612,032,0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244,812,800
117	43.1550	11.0447	3.4559	26.8791	84.5347	9.9546	303,680,000	280,320,000	28,032,000	584,000,000	612,032,0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244,812,800
118	43.1550	11.0447	3.4559	26.8791	84.5347	9.9546	303,680,000	280,320,000	28,032,000	584,000,000	612,032,0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61,203,200	244,812,800
119	43.1550	11.0447	3.4559	26.8791	84.5347	9.9546	311,480,000	287,520,000	28,752,000	599,000,000	627,752,000	62,775,200	62,775,200	62,775,200	62,775,200	62,775,200	62,775,200	251,100,800
120	44.5678	11.4063	3.5690	27.7591	87.3022	10.2805	327,080,000	301,920,000	30,192,000	629,000,000	659,192,000	65,919,200	65,919,200	65,919,200	65,919,200	65,919,200	65,919,200	263,676,800
121	43.5166	11.1372	3.4848	27.1043	85.2429	10.0380	338,520,000	312,480,000	31,248,000	651,000,000	682,248,000	68,224,800	68,224,800	68,224,800	68,224,800	68,224,800	68,224,800	272,899,200
122	98.2075	25.1343	7.8645	61.1686	192.3749	22.6536	670,800,000	619,200,000	61,920,000	1,290,000,000	1,351,920,000	135,192,000	135,192,000	135,192,000	135,192,000	135,192,000	135,192,000	540,768,000
123	95.7975	24.5176	7.6715	59.6675	187.6541	22.0976	651,560,000	601,440,000	60,144,000	1,253,000,000	1,313,144,000	131,314,400	131,314,400	131,314,400	131,314,400	131,314,400	131,314,400	525,257,600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지역(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A-Type : 15실, B-Type : 11실, C-Type : 6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00분의 10이하 범위(근린생활시설 2실)에서 분양신고일(2022.01.14)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에서 1인당 1호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화성시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1.14) 현재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청약자에 포함합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총 분양금액은 층, 향, 위치 등을 감안하여 차등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위치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니 분양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안목치수선,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호실당 계약면적과 분양금액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전기실, 기계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면적증감에 대해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체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전체 층의 복도부분, ELEV.홀, 계단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은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점)지정개시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점)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점)지정개시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은 사업관계자(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권을 권리의무를 승계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②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동법 제10조 ②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도로 교통, 철도, 지하철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본 물건 계약 시 외국환거래규정,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을"이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공급일정 및 청약신청금
1) 공급일정

청약일시	청약장소	추첨 및 당첨자발표일시	당첨자선정 및 층, 호수 결정방법	계약일
2022년 01월 19일 10:00~18:00	당사 분양홍보관	2022년 01월 22일 10:00	당사 분양홍보관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호수를 무작위로 결정	2022년 01월 22일 10:00 이후

2) 청약신청금 및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계좌	금융기관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예금주
업무시설(오피스텔)	500만원	1010-2122-9252	수협은행	청약신청계좌에 무통장입금	(주)하나자산신탁
근린생활시설	500만원	1010-2122-9229			

• 청약 신청금은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은행 무통장 입금 시 청약 신청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와 청약신청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청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 시	• 청약신청서(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 본인도장(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본인확인증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또는 배우자) • 청약신청금 납입 영수증(은행 무통장 입금시)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법인	• 청약신청서(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청약신청금 납입 영수증(은행 무통장 입금시)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명의)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 구비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청약신청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추첨일시 및 당첨자발표 : 2022년 01월 22일(토요일) (10:00) • 발표장소 : 당사 분양홍보관 및 홈페이지
• 추첨 : 당사 분양홍보관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층·호수를 무작위로 결정
• 유의사항 - 청약자의 착오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명단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 일시 : 2022년 01월 28일(금요일) 까지 순차적 지급 • 환불대상 : 낙첨자 및 당첨 후 미계약자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환불방법 - 청약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환불일 이후 자동이체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좌오류 및 환급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 및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및 분양대금납부
1)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 2022년 01월 22일(토요일) (10:00 이후) • 계약장소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74-4 당사 분양홍보관(전화번호 031-8091-0700)
2)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 청약신청접수증(영수증)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계약용) • 계약자 인감도